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15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누446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1. A 주식회사
	2. B
피고, 항소인	1. [redacted]군수
	2. [redacted]군수
	3. [redacted]시장
	4. [redacted]군수
	5. 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	대구지방법원 2017. 1. 24. 선고 2016구합21017 판결
변 론 종 결	2017. 10. 27.
판 결 선 고	2017. 11. 24.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15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(각 가산세 포함)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[이미 관련사건에서 원고들과 같은 국유임산물 낙찰자들이 취득한 나무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'입목'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.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192(원고 승소) → 서울고등법원 16누81804(피고 항소기각) → 대법원 17두52368(피고 상고기각)]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15

재판장 판사 성수제

판사 김태현

판사 곽병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15

별지

목 록

(단위: 원)

순번	원고	피고	처분일	취득세	가산세	소계	농어촌특별세	가산세	소계
1	A	[redacted]군수	2016. 11. 2.	1,237,600	332,910	1,570,510	123,760	8,530	132,290
2	B	[redacted]군수	2016. 11. 9.	1,836,000	465,240	2,301,240	183,600	9,800	193,400
3	B	[redacted]시장	2016. 11. 8.	677,600	166,620	844,220	67,760	3,110	70,870
4	B	[redacted]군수	2016. 11. 10.	1,839,600	585,360	2,424,960	183,960	21,740	205,700
5	B	[redacted]시장	2016. 11. 9.	1,717,000	816,770	2,533,770	171,700	47,330	219,030
6	B	[redacted]시장	2016. 11. 9.	1,636,000	433,210	2,069,210	163,600	10,600	174,200

끝.